

변 경 대 비 표

■ 펀드명 : 하나가치성장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■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6 년 09 월 29 일

■ 변경사유

- 모투자신탁 삭제(하나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

■ 신탁계약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모투자신탁 삭제	①~③ (생략)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태극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. 하나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3.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⑤ (생략)	①~③ (좌동)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태극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. (삭제) 3.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⑤ (좌동)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모투자신탁 삭제	집합투자업자는 -(생략)-따른다. 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하며,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제 2 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가. 제 3 조제 4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 수준으로 한다. (수준이라 함은 $\pm 10\%P$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	집합투자업자는 -(좌동)-따른다. 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하며,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제 2 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가. 제 3 조제 4 항(삭제) 제 3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 수준으로 한다. (수준이라 함은 $\pm 10\%P$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

		나. (생략) 2. (생략)	나. (좌동) 2. (좌동)
--	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■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목적 및 전략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(삭제)

■ 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			
투자목적 및 전략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(삭제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운용전문인력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(삭제)
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(삭제)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(삭제)
9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(삭제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(세전기준)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(삭제)